

2022년

제조업



# 산재예방지원 사업 안내



#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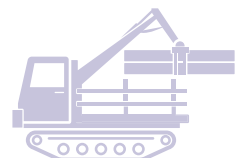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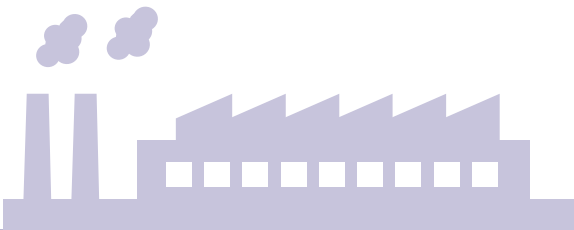
## 제조업

### 산재예방지원

### 사업 안내

---

01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03
0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04
03 안전투자 혁신사업	06
04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08
05 위험성평가 인정	09
06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	12
07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14
08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16
09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17
10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19
11 근로자건강센터 <sup>(분소)</sup> 설치 · 운영	22
12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23
13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24
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지원	26
15 안전보건진단	28
16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32
17 패트롤 현장점검	33
18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sup>(위탁)</sup>	34
19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sup>(위탁)</sup>	35
20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36
21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38



# 01

##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안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50~299인, 제조·기타업종) 컨설팅 지원

\* '22년 사업예산(한시) : 58억원(사업비 56억원, 운영비 2억원)

### 대상 기업



- (업종)제조 및 기타업종, (규모)중소기업(50~299인) 2,240개소
- 컨설팅 신청 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기업선정
  - \* ① 고위험 → ② 소규모 (50~150인) → ③ 안전관리자 자체선임 (안전관리 미대행) 順
  - \*\* 제외 : 대기업 2,704개소, 현장지원단 컨설팅 ('21, 400개소), 화학업종 컨설팅 ('22, 500개소)

### 컨설팅 기관



- 수행기관 공모에 응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문기관 중 심사·선정 (공단 광역본부)
- \* 컨설턴트 자격 경력 기준 : ① 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②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9년 이상 실무경력, (가점) KOSHA-MS 또는 ISO 45001 심사원 자격 보유 시

### 컨설팅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7대 핵심요소) 구축·지원  
예)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컨설팅 일정 및 방법

- 컨설팅('22.2~6월), 모니터링(대상 5~10%, 9월), 결과평가(10월)



- 민간전문가 (2인 1조 편성), 대상 기업별 4회 이상 방문
- \* 컨설팅 수행시 기업 본사에서 반드시 참여하고 사업주 (CEO) 등 면담 2회 원칙

###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도 적극 활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접수처

주관기관	접수·선정심사 권역	주관기관	접수·선정심사 권역
서울광역본부 (임세훈 대리)	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 강원동부 (광역사업부: 02-6711-2855)	대구광역본부 (남희연 과장)	대구, 대구서부, 경북, 경북동부 (광역사업부: 053-609-0520)
부산광역본부 (김희진 대리)	부산, 경남, 울산, 경남동부 (광역사업부: 051-520-0535)	인천광역본부 (김수정 주임)	인천, 경기, 경기북부, 고양파주, 경기중부, 경기서부, 경기동부 (광역사업부: 032-5100-528)
광주광역본부 (신호중 대리)	광주, 전북, 전북서부, 전남, 전남동부, 제주 (안전인증부: 062-949-8726)	대전세종광역본부 (김형진 대리)	대전·세종, 충남, 충북, 충북북부 (광역사업부: 042-620-5615)

## 02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사업 개요

**\* 시행기간**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 까지)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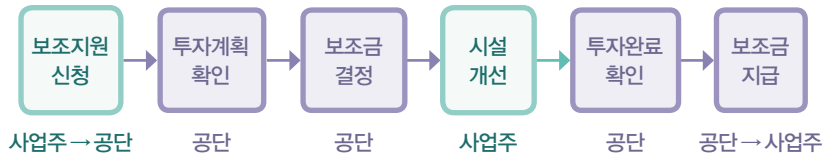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단,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절차



### 지원설비

\* 고용부 고시·공단 규칙개정에 따라 지급대상 설비 변경가능

- 끼임 방지시설(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롤러기 안전장치 등)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등)
- 추락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안전난간, 채광창 안전덮개 등)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설비(국소배기장치, 발산원 밀폐설비 등)
- 고용노동부 감독 및 공단 기술지원에 따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장비
-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지원 대상자 선정



### 클린사업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신청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장의 업종, 규모, 취약 계층 고용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인정한 아래의 사업장은 추가 점수 부여

노사문화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인정사업장, 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장애인 우수 사업주 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일터혁신 우수기업, 기업 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산학협력 우수기업,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21년 ~22년 참여업체), KOSHA-MS 인증,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

## 지원금액 및 조건



구분	지원한도액
사망사고등고위험개선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은 보조금 지급 사업 중 1회만 가능
- 고위험업종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2601), 철근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21801), 각종 시멘트 제품제조업(2185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21822),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20912),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 화학비료제조업(20903)
  - ※당해 연도 안전투자혁신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 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융자금(산재예방시설 자금 용자) 지급 사업장은 당해년도 지원 불가

\* 공단 판단금액은 공단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이 제한됩니다.

## 사업참여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양식: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 03

##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화되거나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정의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이며,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정비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미 확보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화되거나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공정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시행기간  
연중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고용노동부고시(산재에 방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위험기계 교체

- ① 이동식크레인, ② 고소작업대, ③ 리프트, ④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

구분	① 이동식크레인	② 고소작업대	③ 리프트	④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
지원대상	'09.9.30일 까지 생산된 카고형 크레인	'09.6.30일 까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20.7.16일 까지 생산된 일반 작업용 리프트 (권동식, 유압식, 원치식)	'91.12.31일 까지 생산된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20.12.31까지 해당 위험기계를 소유한 사업주에 한정			사용사업장

\* 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 교차지원 :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일 경우, 차량총중량 기준 6.8톤 이내 고소작업대로 신규 교체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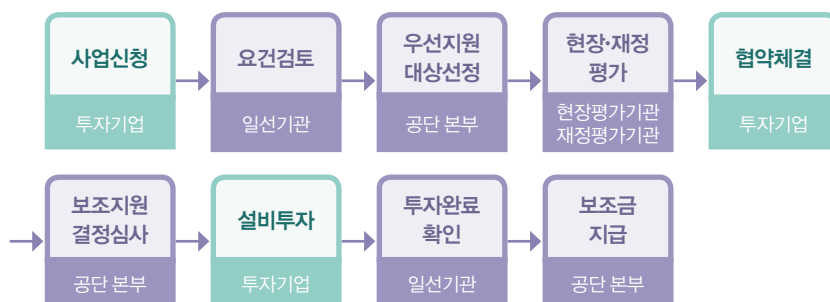
#### - 위험공정 개선

- ① 뿌리공정 보유사업장, ②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구분	① 뿌리공정 보유사업장	②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지원대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지원절차



## 지원금액 및 조건



- **이동식기계 교체**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보조지원금 한도	가격 산정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교체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을 적용하여 산정

- **리프트 교체**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리프트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보조지원금 한도	가격 산정
리프트 교체	기존설비 폐기	교체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표준단가에 따라 산정

- **노후위험기계 교체**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위험기계기구<sup>(6종)</sup>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보조지원금 한도	가격 산정
노후위험기계 교체	기존설비 폐기	교체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 **위험공정 개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개선하고자 하는 직접 생산설비 및 그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보조지원금 한도	가격 산정
뿌리공정개선 고위험 3대 업종	제조공정 개선	사업비의 50% (1억원 한도)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검토 결과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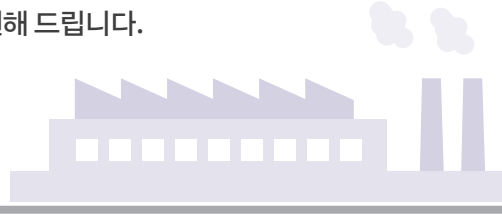
## 사업참여방법

-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운영시스템 홈페이지(anto.kosha.or.kr)-사업안내 또는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사업공고-참여신청

# 04 산재예방시설 자금 용자

근원적으로 안전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장기 저리조건의 용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개요

### \* 시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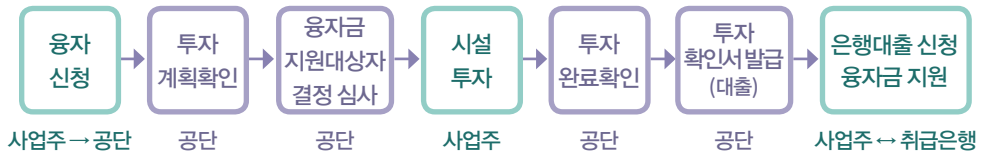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 까지)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원절차



###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지원설비

- 유해·위험 기계·기구(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 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개선·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 지원금액 및 조건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용자금 상환시 추가 지원 가능)
- 고정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총 10년 상환

## 사업참여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서 양식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 05 위험성평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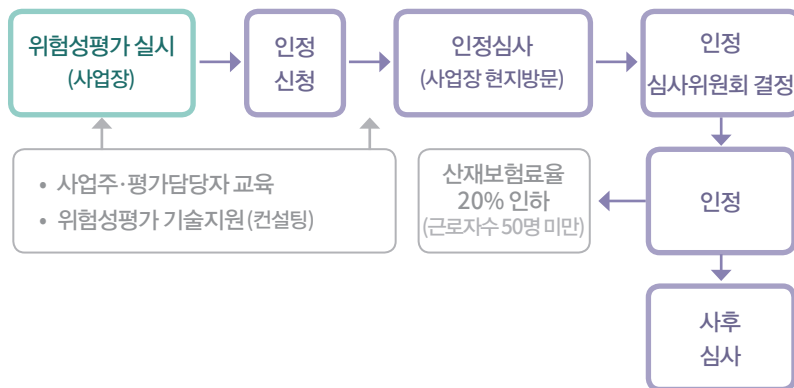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용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팅: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건설팅 해드립니다.
  - \* 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에 등록된 민간 전문가를 통해 건설팅을 받아도 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인정 시 클린보조금 1천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
- 기술보증기금(KIBO)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p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시 기술성 평가점수 우대, 지원한도가 상향(60억→100억)됩니다.
-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우대, 보증(료) 20% 할인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신청서 및 「위험성평가」 관련 공단 교육·컨설팅 신청서는 「위험성평가」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 → 게시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인정 [ ]재인정

사업장명	[ 건설공사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소재지	[ -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로자 수 (총 공사금액)	[ 명 억원]
기타	*위험성평가인정신청의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 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개인식별, 본인확인,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정보] 아이디, 성명, 이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하는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을 할 수 없으며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06

## 산재보험료율 인하 혜택

사업주가「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여 주는 제도('14. 1. 1 시행)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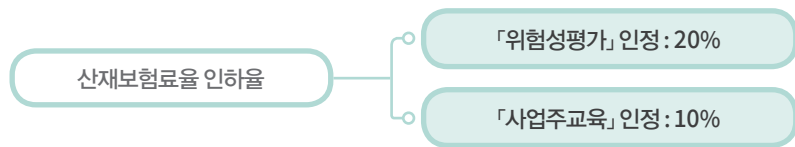
\*\*사업주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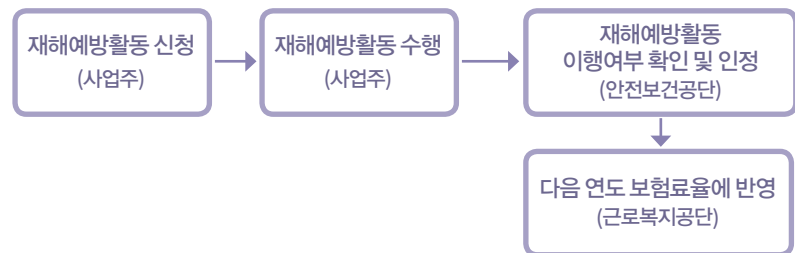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높은 값을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 관련근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교육 1년  
- 산재보험료(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처리 절차



### 인정 취소

- 중대재해 발생 등의 경우 산재보험료(요율) 인하 취소

### 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시행



# 07

## 소규모 사업장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비용지원 목적



-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 2차 실시 비용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재원 소진 시에는 신청 및 지원을 종료 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 배치전·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 석면 등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금속가공유 1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소음, 진동 등 물리적인자 8종
  -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석면 분진 등 분진 7종
  - 야간작업 2종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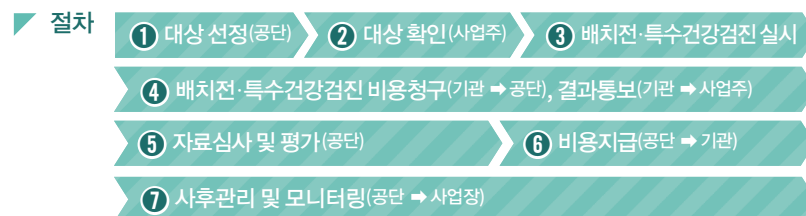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2조제1항 관련 별표23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위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전 건강진단은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신규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실시)

##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 사업소개 또는 자주찾는항목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30인 미만 사업장
  - \* 신청 후 「신청 결과 확인」에서 대상 여부 확인



# 08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후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비용지원 목적



-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 2022년 비용지원 대상 신청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서 비용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보유한 사업장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21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 지원 금액



**265 억원**  
2022년 예산

\* 재원 소진시에는 신청 및 지원을 종료하므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작업환경측정 실시

※ 공단 산정금액 기준

- 기존 측정사업장
  - 사업장당 측정 비용의 70%를 지원 - 최대 지원 가능 금액: 4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측정금액 전액지원(최대 100만원 까지)
  - \* 신규사업장 : 과거 3년동안('19~'21년)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

###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또는 자주찾는항목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 후 「신청 결과 확인」에서 대상 여부 확인

### 절차

- 1 작업환경측정 신청(사업주)
- 2 대상 선정(공단)
- 3 작업환경측정 실시(기관)
- 4 측정 비용지불 청구(기관 → 공단), 결과통보(기관 → 사업주)
- 6 비용지급(공단 → 기관)
- 7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공단 → 사업장)



# 09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발병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 ※ 지원불가 :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
- ※ 지원제외 : ① 사업주, ② 상호출자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 1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자
  -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③ 총콜레스테롤≥240mg/dL 또는 LDL≥160mg/dL 또는 중성지방≥200mg/dL
  -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 4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5 만 55세 이상

###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아래 검사항목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합니다.

• 기본검사: 자부담금 42,600원(뇌·심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항목으로 구성)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 항목	① 문진 및 의사상담	① 신체계측 (키, 몸무게, 허리둘레) ② 혈압	① 공복혈당	⑥ LDL콜레스테롤	① 요단백 ② 미량알부민
	②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② 당화혈색 (HbA1c)		
			③ 총콜레스테롤	⑧ 신사구체여과율 (e-GFR)	① 경동맥 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 CT (석회화 점수) ③ 심전도
			④ HDL콜레스테롤	⑨ 호모시스테인	
			⑤ 트리글리 세라이드		

※ 상기 검사항목의 건강진단비용은 213,000원으로 지원금 170,400원(80%)은 공단이 부담

• 선택검사: 신청자 중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시 정밀검사 추가 가능 <희망자에 한함>

(지원조건) ① 만55세 이상, ② 총콜레스테롤≥310mg/dL, ③ 혈압≥180/110mmHg, ④ 당뇨(공복혈당≥126mg/dL 또는 당화혈색소≥6.5%), 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⑥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5% 이상

(자부담금) ① 심장초음파 2.5만원, ② 관상동맥 조영CT(기본검사 비조영CT 대체) 2.5만원, ③ 뇌혈관MRA 4만원

※ 선택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검사항목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비용지불 : 신청인은 자기부담금 20%만 건강진단 당일에 해당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 사후관리

**건강상담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회 (주기 1개월 이상)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부담금 없으며, 건강상담 이외에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추가검사** 정밀검사 비용의 80%

- 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의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신청방법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http://www.kosha.or.kr)) 메인화면

- ① **바로가기** 자주 찾는 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 ② **신청경로** 「사업소개-재정지원-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 사업주(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첨부) 또는 노동자(SMS 본인인증)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FAX 송부(052-702-9507)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심층건강진단 실시기관

<'22.2.10.기준>

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	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
서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02-2038-6115	전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063-259-8800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02-2140-6010	전북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3길 13	063-259-8800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02-3290-9800	제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연북로 111	064-740-0237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	02-2600-2005	제주	의료법인 해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000
서울	서울DMC건강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070-5138-5532	대전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	042-530-2100
서울	독일하트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02-334-1008-9	충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043-299-5746
서울	재단법인 미래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02-540-0001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053-341-901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본원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02-3702-9000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	053-757-050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여의도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02-368-8114	대구	한국의학연구소(KMI) 대구 검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11	053-430-500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강남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	02-3496-3300	경북	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20길 46	054-478-9591
경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250-5800	경북	(의)안동병원 안동시 양실로 11	054-840-1656
경기	한국의학연구소(KMI) 수원 검진센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031-231-0114	부산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5310
경기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흥병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031-8021-6947	부산	이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051-631-5225
경기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070-5083-1819	부산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051-419-7757
인천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43	1661-0099	부산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051-610-9993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861	부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45	051-553-9701
인천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032-890-8700	부산	부산미래IFC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051-710-2000
인천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	032-890-5713	부산	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 검진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051-810-1500
강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춘천시 남춘로 50	033-260-0800	울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변영로 360	052-296-5671
강원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	033-639-8904	경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87
광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062-610-3147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280
광주	한국의학연구소(KMI) 광주 검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062-602-2100	경남	(사)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055-259-0100
전남	여수중앙병원 여수시 둔덕2길 6-3	061-644-9000			

※ 건강진단기관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신청사이트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10

##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옥내·외 계절별 기후변화(미세먼지, 폭염,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 기본수칙 이행지도 및 예방용품을 지원하여 계절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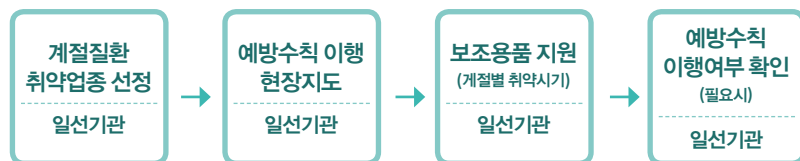
### 사업목표

- 대상 :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보유사업장\*  
\* 건설현장, 환경미화업 등 옥내·외 작업 사업장
- 사업물량 : 2,500회  
- 옥외노동자 마스크 지원 : 285만개

### 추진내용

- 여름·겨울철 기후대응 계절질환 예방조치 자율이행 지도  
- 폭염(6월~9월), 한파(11월~2월)기간 계절질환 3대 예방수칙 준수 확인  
※ 폭염대응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보조지원사업 연계  
- 사업장·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옥외·옥내 작업장 폭염 예방 가이드 및 특보상황 전파
- 기후대응 취약시기\* 보조용품 지원 및 집중 지도  
- 계절별 보조용품(Cool·Warm-Kit) 제작하여 취약시기 집중배포  
\* 여름(7월 중순~8월), 겨울(12월 중순~1월)
- 미세먼지 노출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배포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지도  
※ 공단사업과 민간기관 마스크 배포용역사업 등을 통해 배포

### 추진절차



# 11

##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의 설치·운영으로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센터(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 근로자 건강(질병)상담실 운영(근로자 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등)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운영
- 심리상담실 운영



### 일하는 사람들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상담 전문가 등 직업건강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운영 시간

\* 이용요금 : 전액 무료

- 센터별 상이 (탄력적 운영)
- \* 희망하는 사업장은 단체 예약 시 이동건강상담 및 집단 상담 가능

### 이용 가능한 장소

- 전국 23개 센터 및 21개 분소 운영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군포분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 (군포분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 href="http://www.gswhc.or.kr">www.gswhc.or.kr</a>	031-364-7680 (031-8086-7195)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하1층 116호	<a href="http://www.icwhc.or.kr">www.icwhc.or.kr</a>	032-260-3661 (032-528-1155)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103/104호	<a href="http://www.gjwhc.or.kr">www.gjwhc.or.kr</a>	062-713-5190 062-713-5199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서대구분소)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서대구분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도21길 33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a href="http://www.dgwhc.or.kr">www.dgwhc.or.kr</a>	053-585-5501 (053-584-3406) (053-615-6497)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창원SK테크노파크 2동 11층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22호	<a href="http://www.knwhc.or.kr">www.knwhc.or.kr</a>	055-713-2400 (070-4270-0240)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 (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	<a href="http://www.suwhc.or.kr">www.suwhc.or.kr</a>	02-6947-5700 (02-2268-6497)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삼한하이텍스 A동 127호	www.gdwhc.or.kr	031-739-9301 (031-698-2990)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www.uswhc.or.kr	052-201-9960 (052-288-7772)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김포양촌분소)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층 (김포양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나동 243호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층 204호	www.bcwhc.or.kr	032-329-9161 (031-999-7602) (031-998-9165)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5층	www.cbwhc.or.kr	043-218-9415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아산분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아산분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	www.cnlhc.or.kr	041-522-8993 (041-547-7993)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한신에스메카 1층)	www.tjwhc.or.kr	042-936-9571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분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	www.bswhc.or.kr	051-329-7300 (055-385-7301)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즈니스지원센터 213호	www.gbwhc.or.kr	054-475-2511 (054-465-2511)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패이어빌딩 C동 2층 (평택분소)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청은상가1층	www.gnwhc.or.kr	031-205-8960 (031-663-8953)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	www.jdwhc.or.kr	061-692-9640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www.jnswhc.or.kr	061-462-2900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591 서울숲 A타워 308호	www.sgwhc.or.kr	02-2093-2650 (02-6077-7500)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영천분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 (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안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	www.gsswhc.or.kr	053-853-8579 (054-338-8541)
전주 근로자건강센터 (완주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 (완주분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www.jjwhc.or.kr	063-211-9988 (063-262-7733)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호 (춘천분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www.강원근로자 건강센터.kr	033-745-7289 (033-262-2788)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www.jeuwhc.or.kr	064-752-8961 (064-745-8961)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남양주분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 (남양주분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www.ggbbwhc. or.kr	031-858-9030 (031-572-9032)

# 12

##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대형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b>서비스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li> <li>·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li> <li>· 일상·직장 생활 복귀 도모</li> <li>·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li> <li>·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 연계</li> </ul>
<b>일하는 사람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li> </ul>
<b>운영 시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별 상이(탄력적 운영)</li> </ul>
<b>이용 가능한 장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3개 센터 운영</li> </ul>

센터명	소재지	담당지역	전화번호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인천근로자건강센터 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북부)	032-818-3660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서울특별시(남부)	032-329-9565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364-7603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등 남부지역	031-739-9301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역	042-936-9573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대구근로자건강센터 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070-8827-4853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	062-713-5185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내)	경상남도 전역	055-713-2401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북부지역	070-4139-2607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울산근로자건강센터 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52-201-9963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전라북도 전역	063-211-9988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제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제주도 전역	064-752-8961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충남근로자건강센터 내)	충청남도 전역	041-566-8993

# 13

##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근로자 정기교육을 공단에서 전문강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내교육(사업장 지원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교육 시 자체적으로 교육 추진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교육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 방법: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 교육 지원
- 내용: 작업전 안전점검, 업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사례중심 교육
- 시간: 요청시간 (1~2시간)
- 교육비: 무료
- 신청: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koshats.or.kr](http://www.koshats.or.kr))

### 체험교육장 운영

▶ 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현황(6개소)

- 원청 및 협력업체 대상 체험교육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보건 교육 지원

연번	명칭	소재지
1	중부	인천 부평구
2	경남	경남 김해시
3	호남	전남 담양군
4	경북	경북 경산시
5	충청	충남 공주시
6	제천	충북 제천시

- 체험교육과정 운영 현황 (4시간 내외, 1회당 25명 내외)
- 안전시설물 체험(3시간): 안전대 매달리기, 추락체험, 줄걸이 안전실습, 안전모 충격체험 등 25종
- 가상안전 체험(1시간): 입체영상(3D) 시청 및 가상현실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훈련, 재해사례 체험 등 87종
- VR 안전체험
  - ① 가상체험 장비(HMD)를 착용하고 타워크레인작업 및 비계 작업 체험
  - ②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현장 낙하물 맞음, 떨어짐 사고체험  
→ 가상공간에서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



# 14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MS) 구축지원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실행)에 대한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 체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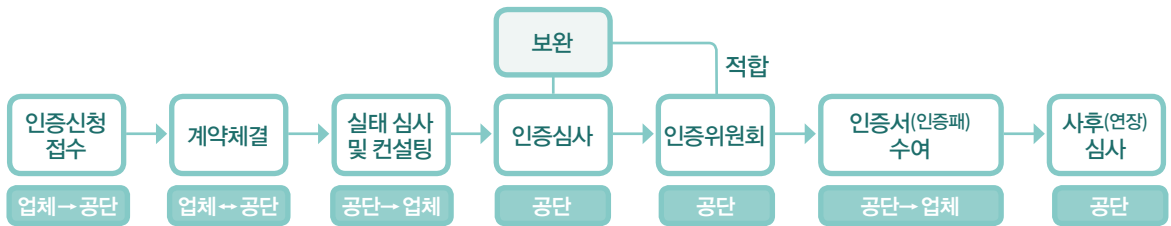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은 매년 사후/연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사업장의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에 안전 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의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 업무추진 절차



### 인증기준

#### 「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

- 조직의 상황(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리더십과 의지 표명, 안전 보건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계획수립(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지원(자원, 역량 및 적격성, 인식,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 실행(운영계획 및 관리,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성과평가(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내부심사, 경영자 검토), 개선(일반사항,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지속적 개선)

#### 「안전보건활동분야」(해당한 경우에만 적용)

- 작업장의 안전조치,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떨어짐·무너짐 재해 예방 활동, 안전검사 실시,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 활동, 전기재해 예방 활동,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 활동,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 지원, 안전·보건관계자의 역할과 활동, 산업재해조사 활동, 무재해운동의 자율적 추진 및 운영



## 인증기준

###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 경영자, 중급관리자(팀장, 부·과장, 대리), 현장관리자(기사, 직장, 조반장),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담당자, 조정자), 협력업체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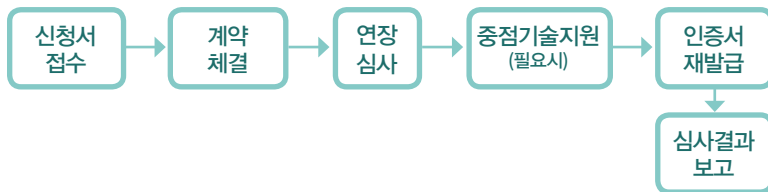
#### 신규인증심사



#### 사후심사



#### 연장심사



## 인증효과



- 인증사업장 재해감소 효과 입증(인증사업장 재해분석 결과 제조업 평균재해율의 50% 수준 유지)
- 효율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작업환경 및 근로복지 개선
- 각종 법규 및 규제에 대응하여 벌금 및 과태료 절감
-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으로 공생협력 강화
- 주기적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설비의 가동율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 사고손실 위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제고(기업인수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 안전보건방침에 적합한지를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입증
-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

## 지원정책(혜택)

- 심사비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 공동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후 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실태심사비용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지도 A 등급 사업장과 A등급 사업장의 사내·외 협력업체는 다음연도 심사비의 1/2
  - 공동인증기관과 공동인증을 신청한 경우, [별표 5] 심사일수 기준의 1/2만 산정하되 공동인증 심사일수는 최소 1인·일을 적용
  -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은 신규 인증 신청에 따른 실태심사·인증심사·사후심사(첫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 비용 전부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급 평가시 가점 부여
-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비용 지원
-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증사후 심사(첫번째 연장심사 전까지에 한함) 심사비의 1/2



# 15

## 안전보건 진단

중대산업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명령진단 또는 사업주의 자율적 진단 요청에 의해 노후 석유화학공장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보건진단의 분류

#### 진단 주체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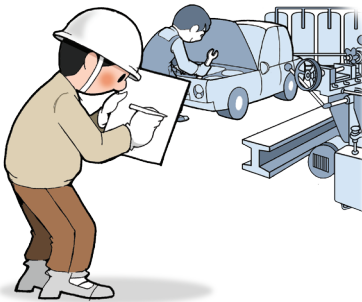
-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과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진단
- (명령진단)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떨어짐·폭발·무너짐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 명령진단 사업장의 선정기준

-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진단내용에 따른 분류

-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안전·보건진단의  
절차**



**업무흐름도**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 진단 사업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서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개선계획(법제49조) :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검토·승인 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지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종합 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붕괴·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사항
보건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안전·보건진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02.6711.28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서울동부지사	02.2086.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남부지사	02.6924.8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원지역본부	033.815.1022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033.820.2513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051.520.0527	부산광역시
울산지역본부	052.226.0526	울산광역시
경남지역본부	055.269.0559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055.371.7526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안전·보건진단 문의처



\* 민간 안전보건진단기관 연락처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전문기술 → 안전보건진단  
→ 절차 및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지역
광주광역시본부	062.949.874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북지역본부	063.240.8551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남지역본부	061.288.8707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064.797.7511	제주특별자치도
전북서부지사	063.460.3625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전남동부지사	061.689.4957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및 보성군
대구광역시본부	053.609.0525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경북지역본부	054.478.8014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대구서부지사	053.650.6835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054.271.2035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인천광역시본부	032.5100.517	인천광역시
경기지역본부	031.259.7128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북부지사	031.828.1950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중부지사	032.6806.546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서부지사	031.481.7519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031.785.3324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고양파주지사	031.995.6581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경북지역본부	054.478.8014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대전세종지역본부	042.620.561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북지역본부	043.230.7155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영동군, 괴산군, 옥천군
충북북부지사	043.849.1000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충남지역본부	041.570.3442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 16

## 안전보건 기술지침 (KOSHA GUIDE)

사업장의 수준 높은 자율안전보건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지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 기술분야 및 경영관리분야를 법령에서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 기술지침 목록

- 시료채취및분석지침(A)
- 조선헌만하역지침(B)
- 건설안전지침(C)
- 안전설계지침(D)
- 전기계장일반지침(E)
- 화재보호지침(F)
- 안전보건일반지침(G)
- 건강진단및관리지침(H)
- 화학공업지침(K)
- 기계일반지침(M)
-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O)
- 공정안전지침(P)
- 산업독성지침(T)
- 작업환경관리지침(W)
- 리스크관리지침(X)

\* 공단홈페이지 접속 → 자료마당 → 안전보건기술지침

### KOSHA GUIDE

#### 예시

- 소규모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적: 이 지침은 소규모 작업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유발하는 여러 위험요소들에 대한 예방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여 상해 및 사망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종류의 소규모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조도'라 함은 밝기의 척도이며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밀도를 말한다. 즉, 1축광(cd)의 점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구면에 비치는 광의 밀도를 1 lux 라 한다.
    - (나) '유체'라 함은 기체 및 액체를 말한다.



# 17

## 패트롤 현장점검

사고사망 발생 위험현장·작업·기계설비에 대한 상시순찰 및 불시점검 (Patrol)을 통하여 불량현장은 반드시 개선시킨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사고 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점검 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 (끼임+추락)

#### 끼임

- ① 정상작업의 경우 : 끼임 위험기계의 ▲방호조치, ▲동력차단장치 (비상정지장치)
- ② 유지·보수 등 비정형작업의 경우 : 끼임 위험기계의 ▲운전정지, ▲LOTO(Lock Out:잠금장치/Tag Out:표지판) 설치

#### 추락

- ① 작업발판·안전난간·방망·개구부덮개 설치
- ②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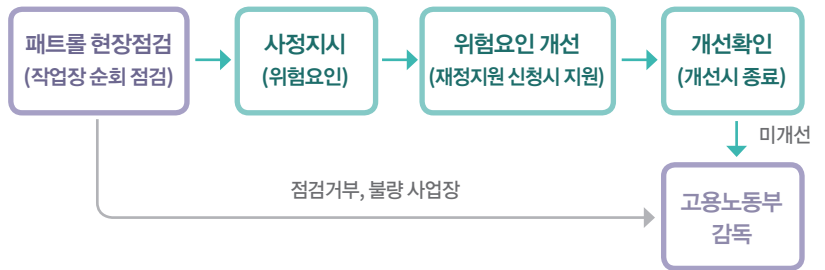
#### 보호구

-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지급, 착용 및 상시관리

### 점검 기간

- 연중 실시
- ※ 점검거부 또는 미개선 등 불량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 실시

### 점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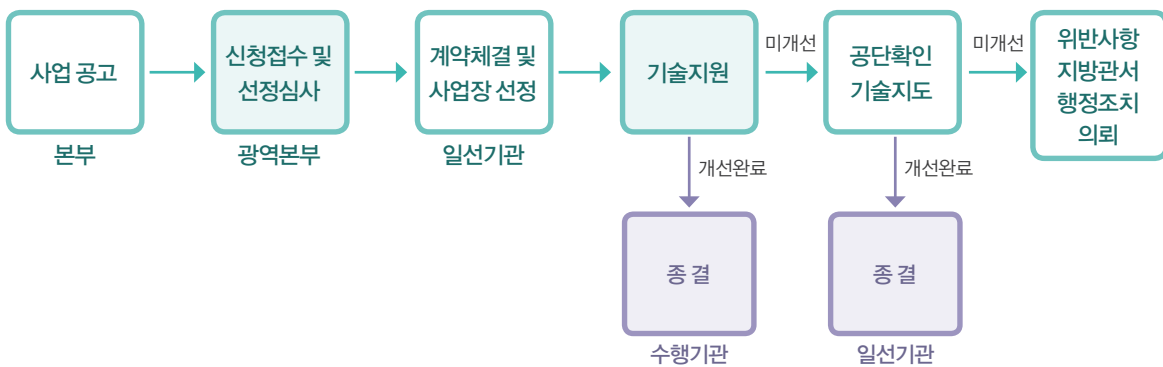
# 18

##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의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 및 설비, 화학물질 보유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민간재해예방전문 기관을 통해 사망사고, 화재·폭발·누출사고 등의 주요원인을 발굴·개선지도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사업추진 절차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 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직접원인 발굴·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이행실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재해발생 취약요인·유해·위험요소(인력·설비·물질 등) 현황파악 및 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장 내 발생 재해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확인 및 제도 안내
-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맞춤형 재해예방 자료 보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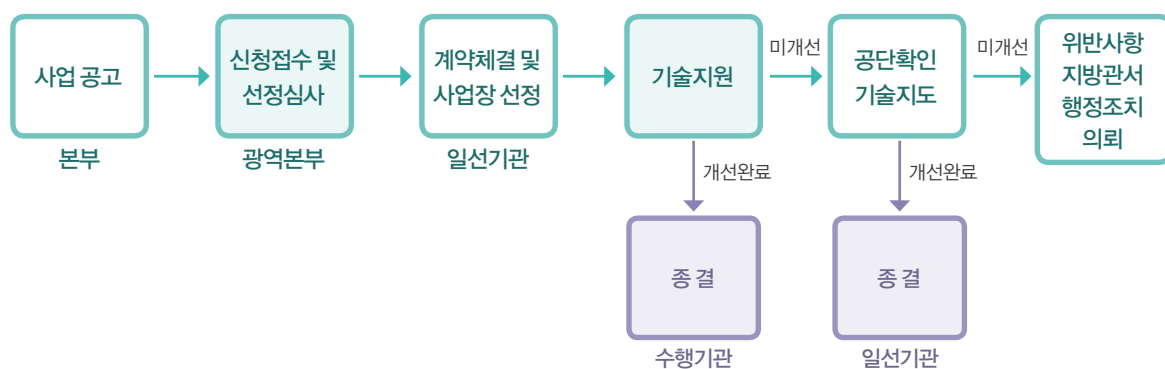
# 19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등 자율 보건관리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및 질병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사업추진 절차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1~800억 건설업 포함)

### 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 특성 및 핵심 위험요인에 따라 테마별\* 기술지원 실시
  - \* ① 작업환경관리 - 화학물질 중독예방, 폭염, 국소배기장치 관리 등
  - ② 작업관리 - 질식재해예방, 근골예방
  - ③ 직업건강관리 -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재해발생 취약요인 및 보건관리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 제시
- 사업장 내 발생 재해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 현장 맞춤형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건강증진 자료 보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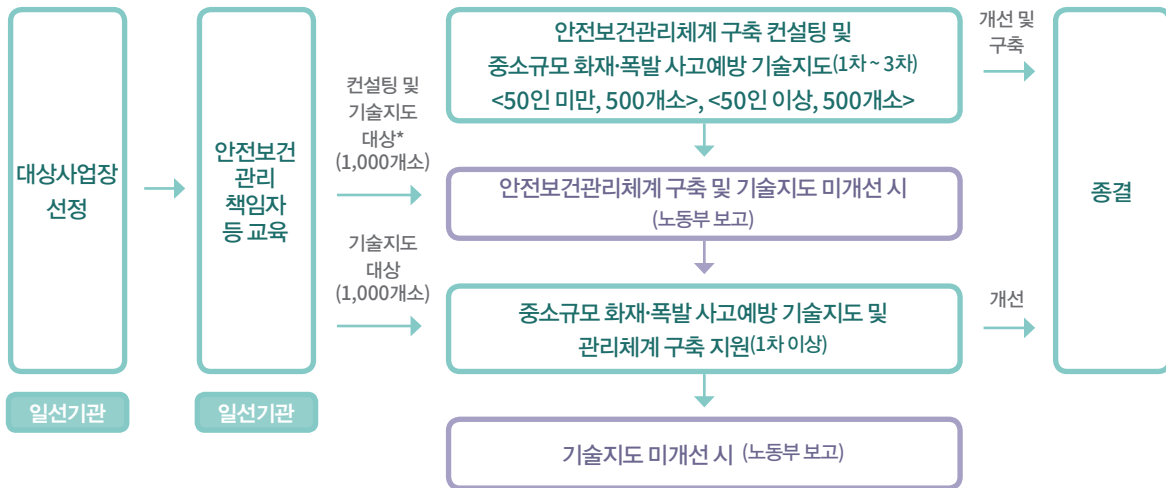
# 20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기술지도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PSM대상 제외) 및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다발하는 반응기 등 공정 설비 또는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맞춤형 기술지도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b>사업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PSM대상 제외) 중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li> </ul>
<b>추진방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검토·지원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li> <li>공정·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근원적 안전성 확보</li> <li>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홍보를 통한 사업 이행 분위기 확산</li> <li>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검토·지원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li> </ul>

### 추진절차



### 컨설팅 및 기술지도

#### 실시시기

- 50인 이상, 500개소 : 가급적 상반기 내 3차례 실시
- 50인 미만, 500개소 : 가급적 하반기 내 3차례 실시

## 컨설팅 및 기술지도

### 지도내용

#### • 1회차

##### 수행내용

- 회사 소개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확인
- 안전보건건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 절차 설명
-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및 교육
- 위험요인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위험요인 확인 및 기술지도(화재·폭발·누출 등 집중 점검)

#### • 2회차

##### 수행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 현장 위험요인 개선 확인(화재·폭발·누출 등)

#### • 3회차

##### 수행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방안 이행 현황 파악
- 현장 위험요인 개선 확인(화재·폭발·누출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위험요인 추가 개선 방안 및 최종 결과 설명(강평)

## 기술지도

### 실시시기

- 상·하반기 내 1차례 등 실시

### 지도내용

##### 수행내용

- 유해위험물질 관리 상태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 조치 여부
- 개인 보호구 및 비상대피 적정성
- 주요 작업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분석
-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경영자마인드 등)
- 3대 사고사망(추락, 끼임, 질식)에 대한 추가 기술지도(현장 확인 후 필요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체크리스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21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참여 대상

- 대상 : 근로자 50명(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와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또는 정비·보수 등 고위험작업 사업  
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의 범위

- 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물질(51종)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 2 고독성(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78종) 제조·사용 사업장
- 3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은 삼산화안티몬, 클로로포름, 시안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제조·사용 사업장

- 업종 : 전 업종\*

\* 다만, 조선업 및 건설업 사업장 제외

- 선정 : 사업대상 우선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선정

### 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

- 참여 신청기간 : '22. 2. 21(월) ~ 2. 28(월)
- 접수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심사 및 승인 : '22. 3. 10.(목)까지 완료

## 프로그램 개요

※ 비교 : 절대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90점 미만~80점 이상은 B등급, 80점 미만은 C등급

## 참여 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 및 혜택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혜택	적용 시기	적용 시기	
			모기업	협력업체
A등급 (상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감독 일부 유예 및 연기요청권(90일)</li> <li>정부포상 우대</li> <li>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연장 심사비 1/2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자체감독 대상 사업장</li> </ul> </li> </ul>	참여 다음 연도	○	○
A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 우대</li> <li>KOSHA 18001 및 KOSHA-MS 사후·연장 심사비 1/2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SHA 18001 및 KOSHA-MS 인증업무 처리 규칙 별표5 참조</li> </ul> </li> </ul>	참여 다음 연도	○	○
모든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50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SHA-MS 컨설팅비용 지원업무 처리지침 제7조 참조</li> </ul> </li> </ul>	수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SHA-MS 실태심사비 면제</li> </ul>	참여 당해 및 다음 연도 (참여승인 전까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린사업 보조 및 산재예방시설 용자 우선지원</li> </ul>	참여 당해 및 다음 연도	×	○
모든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혜택 부여(300인 미만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용 100% 적용</li> <li>- 보증요율 0.2%p 감면</li> </ul> </li> </ul>	참여 다음 연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60억 → 100억)</li> </ul> </li> </ul>	참여 다음 연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혜택(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합)료 20% 할인</li> </ul> </li> </ul>	참여 다음 연도	○	○

##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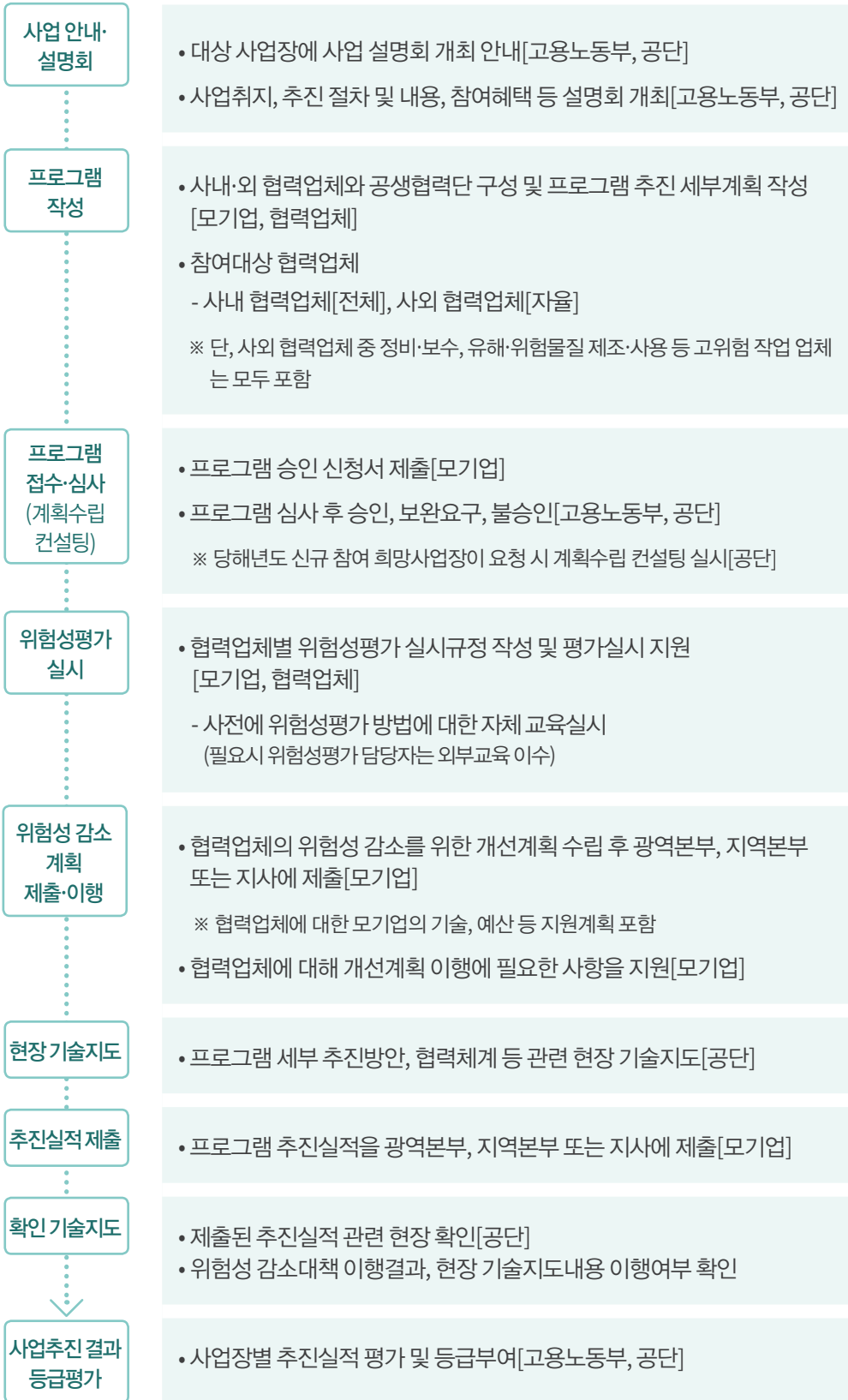
### •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7월중)

※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 추진사례

##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모기업 부문**

- 공생협력 추진의지
  - ①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모기업 · 협력업체 부문**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① 공생협력 운영 방침·규정의 수립·전달·확인 체계
  - ②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③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 ① 위험성평가 계획 ② 위험성평가 이행 ③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 ④ 지속적 개선 ⑤ 기록 및 관리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 ① 계획대비 이행도 ②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정도
  - ③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노력 정도
  - ④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④-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④-2.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협력업체 부문**

-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 ①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②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 ②-1.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
    - ②-2. 참여 협력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사망 발생 여부 (감점)

※ 평가지표는 3월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하여 공지 예정